■ 지하수법 시행규칙 [별지 제54호서식] <개정 2025. 1. 24.>

# 지하수정화업 [ ] 등록 [ ] 변경등록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10일 |
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 | 상호(명칭) | 사업자등록번호 |
| | 성명(대표자) | 법인등록번호(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)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

| | | |
|---|---|---|
|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| | |
| 전문인력 | 총 명(기술분야별 명) | |
| 시설・장비 | | |
| 변경등록내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
「지하수법」 제29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・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정화업의 [ ]등록 [ ]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시장・군수・구청장**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 제출서류 | 1.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br>2. 시설・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<br>3.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(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을 증명하는 서류<br>※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 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. | 수수료<br>-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<br>・등록: 5만원<br>・변경등록: 3만원<br>-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<br>・등록: 4만5천원<br>・변경등록: 2만7천원<br>- 전자화폐・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<br>・등록: 4만5천원<br>・변경등록: 2만7천원 |
|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br>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<br>3. 국가기술자격증(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| |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 처리절차

| 신청서 작성 | → | 접수 | → | 검토 | → | 현장 확인 | → | 결재 | → | 등록증 발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인 | | 민원실 | | 처리기관 (시・군・구) | | 필요시 | | 처리기관 (시・군・구) | | 처리기관 (시・군・구) |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